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같이대출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와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하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을 통칭하여 "은행")과 채무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앱' 및 전북은행 '개인뱅킹 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 전북은행 영업점에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같이대출은 202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은행이 시험 운영하여 제공하는 같이대출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서비스 운영종료 및 책임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동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지정기간(2027. 04. 02.)이 만료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3.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하여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
4. 은행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은행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3조 위험고지 및 동의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운영 중인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내용을 사전에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조치는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4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제5조 분쟁처리

① 이용자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에 서면,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해결을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제6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은행이 제공하는 같이대출 거래에 적용됩니다.

### 제7조 여신재원의 분담

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사전에 양 행간 합의된 분담비율(이하 "실행비율")에 따라 대출재원을 분담하며, 대출잔액에 대하여 실행비율만큼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 제8조 업무수행

① 은행의 여신거래에 대하여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으로부터 아래 각 호의업무를 위탁받아 고객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신청, 신용회복/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자 사망, 대손상각, 연체 1년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북은행의 대출 부담분에 대한 카카오뱅크의 수탁업무 수행은 종료됩니다.

1. 상품 소개 및 거래조건 안내

# B

2. 채무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고객 확인
3. 적합성 원칙의 이행을 위한 고객 정보 확인 및 설명의무 이행
4. 대출구비서류의 접수 및 확인
5. 대출심사 대상 고객 선정 및 금리한도 산출
6. 대출계약의 체결
7. 채무자에 대한 대출계약 서류의 제공
8. 대출실행 및 원장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9. 채무자에 대한 대출 관련 증명서 발급
10. 대출 원리금 수납(연체 고객의 임의변제에 따른 수납 포함)
11. 고객상담
12. 대출계약 철회, 해지 또는 조건변경 등에 관한 접수대행
13. 채무자의 자료열람 요청 접수 및 회신
14. 연체 안내 알람(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 공동명의 알람에 한함) 발송
15.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접수 및 확인

② 제1항의 사유로 수탁업무가 종료된 시점부터는, 각 은행은 자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제9조 민원의 처리 및 책임의 범위

- ① 원활한 고객 응대를 위하여 제8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민원 및 제반 고객상담은 카카오뱅크가 담당하며, 전북은행의 응대가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전북은행으로 인계하여 처리합니다.
- ②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 행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양 행간 합의된 책임 분담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양 행간 책임 분담비율이 신속히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행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 제10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차주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① 이자·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 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계약의 종료일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고정금리 방식)
2. 대출계약의 종료일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변동금리 방식)

③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 또는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은행은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전북은행 영업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대출계약 해지에 따라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연배상금률(연체이자율)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팩스 등으로 제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B

1.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행은 대출 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의하여 약정이자, 중도상환해약금(대출기간 종료일 전 상환할 때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이자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 유효금리를 산정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 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14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 제1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약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통지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회생·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약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공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을 말함)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제11조 제5항에 의한 경우 지연배상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약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적정한 조치 없이 위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4. 제13조, 제27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 B

##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행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 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행 없이 위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14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⑤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2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⑥ 은행이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⑦ 은행 중 어느 한 곳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5항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은행의 같이대출 부담분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 제16조 기한이익(약정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15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5조 제2항 내지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15조 제8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은행은 제1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7조 채무조정 요청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기한전의 임의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9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15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제 예치금 등을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등을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 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제15조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일과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중 늦은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상계한 기한 미도래 제 예치금 등의 이율과 계산방법은 해당 제 예치금 등의 가입 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제20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한 제 예치금 등과 은행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제 예치금 등의 증거가 존재하

# B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증서에 인감도장 등 채무자의 도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장을 찍거나 자필서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21조 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제22조 위법계약 해지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총당(상환)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9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총당(상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총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의 회수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총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담보가 없는 채무를 제쳐놓고 담보가 있는 채무에 총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총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2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 전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총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 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종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제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함께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채무자의 도장임이 확인된 인영·채무자의 자필임이 확인된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인영·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제25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26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채무자가 제2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말미암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기타 서류 또는 전자우편이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 및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해 서면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하거나 전자기록을 확인할

# B

수 있을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27조 회보와 조사

④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 없이 회보하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채무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8조 이행방법 · 준거법

④ 채무자는 은행과 약정한 계좌에 대출원금 및 이자를 입금한 후, 자동이체 또는 은행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상환거래를 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합니다.

⑤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제29조 약관 · 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등의 시행일 직전 1개월간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및 영업점(전북은행에 한함)에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2. 약관등의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은행은 약관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된 약관등의 시행일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그 변경 내용(신·구조 문대비표 포함)을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전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채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및 영업점(전북은행에 한함)을 통하여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은행은 이를 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30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년 월 일

(인)